

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취소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이 취소됨을 공고합니다.

2020.3.2.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- 아 래 -

사업자명	창업보육센터명	지정번호	지정 취소일	비고
김포대학교	김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	제2000-18호	2020.3.2	